

2025년 제9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9 월 30 일

여 수 시 장

김영호



여수시 규칙 제865호

붙임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
2. 취미, 건강교육
3. 문화, 교양교육
4. 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

제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매기별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 12. 31)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여성”을 “주민”으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를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수강권의 양도금지)”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  
(이용)증”을 “수강권”으로,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전대하지 못한  
다”를 “대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회관운영상”을 “회관 운영상”으로, “구분없”을 “구분  
없”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  
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할 수 있다.

④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경력증명서

제1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와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 강사 등 위촉 심사 배점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구분	배점기준	구분	배점기준
학 력 (10%)	1. 대학원졸이상 : 10점 2. 대졸이상 : 8점 3. 전문대졸 : 6점 4. 고졸이상 : 4점 5. 중졸이상 : 2점	전공 적합성 (10%)	1. 응시분야 관련전공 졸업 : 10점 2. 응시분야 관련 비전공 : 5점
강의경력 (20%)	1. 8년이상 : 20점 2. 6년이상 8년미만 : 18점 3. 4년이상 6년미만 : 16점 4. 2년이상 4년미만 : 14점 5. 1년이상 2년미만 : 12점 6. 6월이상 1년미만 : 10점	관련분야 강의경력 (20%)	1. 5년이상 : 20점 2. 3년이상 5년미만 : 18점 3. 1년이상 3년미만 : 16점 4. 1년 미만 : 14점
관련분야 강의자격 (30%)	1.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이상, 직업훈련교사 1급 : 30점 2.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이상, 직업훈련교사 2급 : 27점 3. 중등학교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직업훈련교사 3급 : 24점 4. 실기교사,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인증서 : 21점	관련분야 강의능력 (20%)	1. 대학부교수(전문대학교수)이상 : 20점 2. 대학전임강사(전문대학조교수), 직업훈련교사 1급, 기술사, 기능장 : 17점 3. 전문대학 강사 이상, 직업훈련교사 2급, 산업기사, 기사 : 14점 4. 실기교사,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인증서 : 11점
자격증 소지자 (20%)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1. 기술사, 기능장 등 : 20점 2. 기사1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8점 3. 기사2급, 기능사1급, 능력평가1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6점 4. 기능사2급, 능력평가2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증 : 14점	사회봉사 활동 (10%)	○ 전년도 1. 봉사활동실적 50시간 이상자 : 10점 2. 봉사활동실적 30시간 이상자 : 8점 3. 봉사활동실적 10시간 이상자 : 6점 4. 봉사활동실적 1~10시간 미만자 : 4점
사회봉사 활동 (10%)	1. 선행,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선도위원으로 장관이상 위촉 또는 시장표창 이상(최근 3년 이내),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40시간 이상자 : 10점 2.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30시간 이상자 : 8점 3.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20시간 이상자 : 6점 4.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10시간 이상자 : 4점 5. 전년도 봉사활동실적 10시간 미만자 : 2점	강사지원서 (10%)	○ 지원동기 및 활동 계획, 본인이 생각하는 강사상, 내용 작성에 대한 성실성, 적합성, 수상 및 연구실적 등 포함 1. 내용 평가 상 : 8~ 10점 2. 내용 평가 중 : 5 ~ 7점 3. 내용 평가 하 : 1 ~ 4점
국가기관 공공단체 근무경력 (5%)	1. 2년이상 : 5점 2. 1년이상 2년미만 : 4점 3. 6월이상 1년미만 : 3점	강의계획 서 (10%)	○ 강의목표 및 방향, 주차별 계획 관련 강의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창의성, 충실도 등 1. 내용 평가 상 : 8~ 10점 2. 내용 평가 중 : 5 ~ 7점 3. 내용 평가 하 : 1 ~ 4점
수상경 력 (5%)	○ 전국단위 : 5점, 도단위 : 4점, 시단위 : 3점 ※ 수상경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공인대회에 한함.	면접 (20%)	○ 강사로서 자질, 협업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 성실도 및 도덕성, 시정관심도 등

[별표 2] <삭 제>

<b>강사 등 위촉 심사표</b>						
<del>과목명 :</del>						
구분	개인별평점 배점	<del>개 인 별 평 점</del>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계	100점					
학 력	10					
관련분야 강의자격	30					
강의경력	20					
자격증소지자	20					
사회봉사활동	10					
국가기관, 공공 단체 근무경력	5					
수상경력	5					

[별지 제6호 서식] <삭 제>

<b>여성문화회관 수강신청서</b>					처리기간
					즉 사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여수시 읍면 리 번지 동 ① 동 호			전화번호	
신청과목				차량번호	
수 강 료	— 일금 — 원정 — 감 면				
감면사유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 음		감면 여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 으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 년 — 월 — 일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여수시장 귀하.					
----- 절 취 선 -----					
<b>수강신청 접수증</b>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청과목					
교육기간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개월 )				
개강식안내	— 년 — 월 — 일 : ( — 시 분까지 입장완료)				
	장 소 : —				
수 강 료	— 일금 — 원정 — 감 면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 년 — 월 — 일 여수시장					

여성문화회관 수강신청접수대장

과장	결재		접수 번호	접수 년월일	신청자			수강과목	구분	수강료 (원)	비고
	담당주사	담당자			주 소	성명	전화번호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초급반		
									중급반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사업) ①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u>기술교육 : 미용, 양재, 한복, 제과, 조리(요리), 자수, 컴퓨터, 기타 필요한 교육</u></p> <p>2. <u>취미교육 : 공예, 원예, 서예, 꽃꽂이, 동양화, 서양화, 한국 무용, 한글, 외국어, 사진(비디오), 문예창작, 수지침, 스포츠, 노래교실, 요가, 건강관리, 기타 필요한 과목</u></p> <p>3. <u>교양교육 : 경제, 사회, 문화, 생활예절, 자녀 및 주부교육, 생활법률 등</u></p> <p>4. <u>유아실 : 교육 및 수강생 자녀중 아동(3세 이상부터 취학전 아동)을 일시보호</u></p> <p>5. <u>시설운영 : 사무실, 대강당, 소강당, 기타시설 등</u></p> <p>② 제1항의 교육사업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전부개정</p>	<p>제2조(사업) ①----- ----- -----.</p> <p>1. <u>취업, 창업 지원 기술교육</u></p> <p>2. <u>취미, 건강교육</u></p> <p>3. <u>문화, 교양교육</u></p> <p>4. <u>대강당, 소강당 등 대관</u></p> <p><u>&lt;삭 제&gt;</u></p> <p>② <u>시장은 시정 시책 및 교육수요 등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으며, 매기별 신청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u></p>

2009. 12. 31)

1.·2. (생략)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1. (생략)

2.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선착순으로 선발하며 수강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성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생략)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①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0%에 미달할 경우 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9. 12. 31)

1.·2.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 및 수강신청) -----  
-----  
-----  
-----  
-----

1. (현행과 같음)

2. -----  
----- 주민-----  
-----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단서 삭제>

3.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거나 감면 증빙자료를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 신청하

②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시행이전에 여성문화회관 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얻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여성문화회관 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같음 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수강(이용)증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생략)  
②시장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강사위촉) ① (생략)  
②위촉기간은 신규 위촉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자의 경우 교육과정별로 위촉한다.(전부개정 2009. 12. 31)

<신설>

<신설>

여야 한다.

제6조(수강권의 양도금지) 수강권  
-----  
-----  
-- 승인 없-----  
-----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회관 운영상 -----  
----- 구분 없-----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강사위촉)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당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①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강사위촉 심사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강사를 초빙 위촉함에 있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강사위촉 구비서류) ①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 5. (생략)
6. 경력증명서(국가기관, 공공단체근무)

해연도 교육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종료시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강사의 자격기준) 각 교육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직업훈련 교사로서 자격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과정별 전문 강사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강사위촉 구비서류)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경력증명서

② (생 략)

제11조(강사해촉) ①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강사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